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2021. 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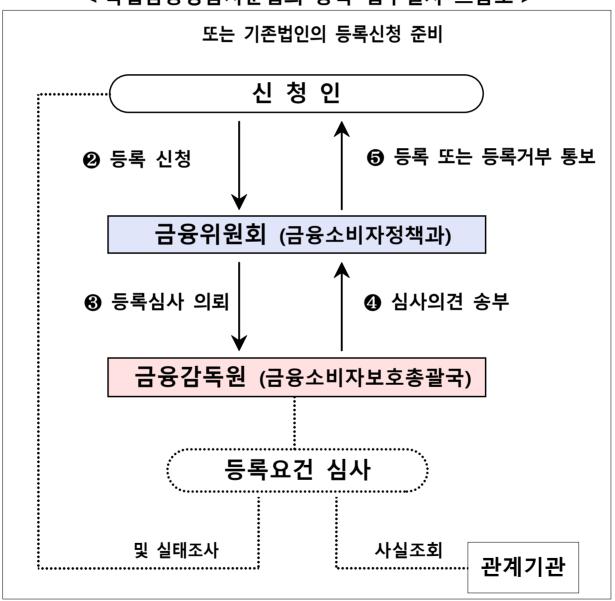
목 차
I. 개 요 ······?
Ⅱ. 등록업무 절차2
1. 신설 또는 기존법인 및 등록신청 준비
Ⅲ. 등록요건 세부 심사내역 ·····?1. 신청서류 검토 ····?2. 등록요건 검토 ····?
Ⅳ. 실태조사 ·······?
V. 업무보고서 제출 및 등록요건 변경 보고?
<붙임>
 등록신청서 양식

I 개 요
1 정의
□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함(법 §2iv 본문)
○ 다만,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정 자문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법 §2iv 단서)
*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수신할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②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등
□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법 §12①i, ii) * (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성 요건"을 갖춘 자 [*] , 이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해당
등록요건 개요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 의 영업방식에 따라 일부 등록요건에 차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 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법§12 , 시행령§5, 규정§5) >

	■ 자격 요건 (법인)
	■ 인력 요건 (상품 및 전산 전문인력 각각 1인 이상)
	■ 물적 요건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공통	■ 요건 (투자상품: 2.5억원/일부 투자상품(일부)·보장성·대출성·예금성 상품: 각 1억원)
요건	■ 재무상태 요건 (부채비율 200% 이하)
	■ 사회적 신용 요건 (신청인의 형사처벌·중대한 행정제재 부존재 등)
	■ 임원 요건(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해당, 형사처벌·행정제재 부존재 등)
	■ 독립성 요건(판매업 겸영 금지, 판매업자와의 非계열사 및 임직원 겸직 금지 등)
개별	■ 온리인 전용 법인: 알고리즘 요건 (코스콤의 확인 필요)
요건	■ 기타 법인: 이해상충방지 요건(방지기준 문서화, 교육훈련 체계 및 위반시 조치 체계 수립)

Ⅱ 등록업무 절차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1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시행령 §82) 다만,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관 등은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규정 §74)

1 신설 또는 기존법인의 등록신청 준비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인"을 전제로 하므로 旣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을 새롭게 설립해야 함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등록 前에는 상호에 "독립"문자(외국어 포함)를 사용할 수 없음(법 §27④)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인 → 금융위)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 1부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사본 1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 호총괄국에 각각 제출(스캔파일을 저장한 USB 제출)
 ※ 접수처 - 금융위원회: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TEL 02-2100-2636/FAX 02-2100-2999) - 금융감독원: (073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TEL 02-3145-5698/FAX 02-3145-5699)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 등록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 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충족 등에 대한 심사 를 금융감독원 에 의뢰
4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첨부서류·관계기관 에 사실조회·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
○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제출서류 및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결격요건이 추후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사후조치 가능
등록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인)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 여부 를 결정 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무서로 통 지

Ⅲ 등록요건 세부 심사내역

<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 ◆ 신청인은 본 내용을 필요 충분한 등록요건 심사기준으로 인식해서는 아니되며, 등록신청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 등록 매뉴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록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등록신청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1

신청서류 검토

- □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등록신청 서류를 확인
 - 등록신청서상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첨부서류**가 맞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

구분	필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 ^{주)}	확인방법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서의 개별 항목별 기재 등	- 신청서상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 여부 - 신청인(대리인)의 서명·기명날인 누락 여부
신청인 관련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설립·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 주주명부 ○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공증받은 정관인지 여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자본금·임원 명단 등 등록신청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공증받은 의사록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신청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여부 해당 업종의 영위 근거서류 해당 여부
임원 요건 관련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결격사유조회 관련서류 포함)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이력서에 인감도장 날인 여부, 등록기준지 (舊 본적지) 기재 여부 경력증명서에 최근 5년간 업무 기재 여부 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여부 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임원 요건 확인서 제출 여부
	○ 임원 요건 확인서 및 증빙서류	외국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첨부 여부
금융 상품 관련	○ 취급 예상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	- 관련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자기 자본 및 재무 상태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감사인 등의 직인 날인 여부 설립중 법인은 생략 가능 설립 후 3개 사업연도 미경과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여부
요건 관련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회계감사인 등의 직인 날인 여부
인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자격증	- 관련 교육기관의 직인 날인 등 여부

구분	필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 ^{주)}	확인방법
관련	○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최근 5년간 관련 업무 기재 여부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제출 여부
	○ 자격확인서류	- 기타 인력 요건 소명 자료
	○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 자료 제출 여부 - 정보통신수단·전자설비·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물적 요건 관련	○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	업무자료 보관 및 손실방지설비·보안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여부 - 물적설비 등 구비 관련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여부 - 고정사업장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사회적 신용 요건 관련	○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여부 -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서 제출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이해 온라인 상충 전용	○ 알고리즘 요건 관련 증빙서류	- 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제출 여부
방지 요건 기타 관련	○ 이해상충행위 방지에 대한 기준 문서화, 교육·훈련 체계 수립, 위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관련 증빙서류	
독립성 요건 관련	○ 신청인의 독립성 요건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임직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제출 여부 - 독립성 요건 확인서 내용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주: 1) 첨부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원본대조필"을 표시할 것 2)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고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을 것

2 등록요건 검토

1 자격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 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등 법인에 해당할 것
 - 신청 시 **신설 법인**인지 또는 **기존 법인**인지 여부는 불문

나. 심사 방법

□ 법인둥기부 등을 통해 확인

2 인력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 (업무수행 인력) 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 취급 상품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경력자**(등록신청일 이전 5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자限)로서 해당 상품의 자격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 ①다출성 상품: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 ②보장성 상품: 생손보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③투자성 상품: 금투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④예금성 상품: 위 ①~⑥ 중 교육
 - **신규취득자**로서 취급 상품유형별로 **자격***을 취득할 것
 - * ①대출성 상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 ②보장성 상품: 생·손보협회의 관련 자격(종합자산관리사를 특화·변형한 자격), ③투자성 상품: 금투협회가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자격, ②예금성 상품: 위 ①~⑥ 중 자격
- □ (전산 인력) 전산설비의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나. 심사 방법

- □ (업무수행 인력) 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서류로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 경력자는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확인
 -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 신규취득자는 금융협회 발급 자격증 사본,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확인
- □ (전산 인력) 관련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추가 확인

3 물적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

-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나. 심사 방법

- □ 사무공간 배치도, 물적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전산설비 등 구비서류*, 고정사업장 관련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 * 전산설비 등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 **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4 자기자본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 (업무수행 인력)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의 구분에 따라 자기자본을 갖출 것*
 - * 각 상품 유형 중 **2개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의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갖출 것
 -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 각 1억원
 - 투자성 상품: ¹⁾모든 상품 2.5억원, ²⁾일부 상품* 1억원
 - *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 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나. 심사 방법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5 재무상태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나. 심사 방법

□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6 사회적 신용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의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세부 항목^{수)}(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

○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

세부 항목^{수)}(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주)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나. 심사 방법

- □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 경찰청 등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7 임원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목)

-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나. 심사 방법

- □ 임원의 **임원 요건 확인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❸ 이해상충방지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온라인 전용 법인) 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세부 항목(규정 제5조제4항 각 호)

-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 限, 제1호)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제2호)
-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 限 제3호)
-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성향

□ (기타 법인)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각목)

-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
-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 체계 수립
-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나. 심사 방법

		(온라인	전용	법인)	알고리즘	구축은	코스콤의	확인서	등을 통	해 홈	}¢	,]
--	--	------	----	-----	------	-----	------	-----	------	-----	----	-----

- ◈ 코스콤 확인서 발급 절차
- **코스콤**(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사무국, https://testbed.koscom.co.kr, 02-767-7980)으로부터 **알고리즘 자가 평가서 양식**을 받아 이를 작성한 후 **코스콤**에 제출
- 코스콤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알고리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 □ (기타 법인) 이해상충방지 관련 내규,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확인

9 독립성 요건

가. 구체적 요건

□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6호 각목)

-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 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이하 "계열회사등")가 아닐 것
-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6호 각목)

나. 심사 방법

□ 신청인의 독립성 요건 확인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통해 확인

Ⅳ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 □ 등록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에 대한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시행령 §8③)
 - (조사기간)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협의 후 2일 내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함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 (조사방법) 임원·업무담당자와의 면담, 전산설비 확인 등을 통해 인력 요건 및 물적 요건 등에 대한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의 실제 구비 여부를 확인
 - (요건 미충족시 조치)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시 재점검을 실시
 - 등록통보 기한까지 등록요건을 시정할 수 없어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록 불가를 통보

2 주요 점검 사항

□ 인력 요건의 적정성

-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상근 여부
-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전문자격 확인
- 업무수행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역할 및 책임 확인

□ 물적요건의 적정성

- 영업에 필요한 업무 공간 확보 여부
- 정보통신설비,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보안설비 등 구축 여부

V 업무보고서 제출 및 등록요건 변경 보고

- □ (업무보고서 제출)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 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 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접수(법 §48②, 영 §39①, ②, §49①iv)
- □ (보고)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48 , 영 §39③,④, §49①v)
 - 변경보고 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변경보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69③)

붙임 1 등록 신청서 양식

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서

1.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의결권 있는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영위하는				
다른 업종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 1-5. 주주명부 1부
-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ਨੀ ਸ਼ੀ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주요	상근	담당	전문인력	임원자격
47	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율)	경력	여부	업무	여부	적합여부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 자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자격을 말함
-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가.	금융상품의 유형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다.	그 밖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 1. 금융상품의 유형은 예금성 상품, ❷대출성 상품, ❸투자성 상품, ❹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하여 줄 것
 - (예: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3-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구분	20	20	20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기재상의 주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이 있음을 기재할 것
-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
 - (1)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 (2)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 (3) 투자성 상품: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 (4) 예금성 상품: 상기 1)부터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 (1) 대출성 상품: 상기 가목의 (1)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 (2) 보장성 상품: 상기 가목의 (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 (3) 투자성 상품: 상기 가목의 (3)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 (4) 예금성 상품: 상기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할 것
- 2. 전산설비 운용·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5-1. 해당 인력별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기재상의 주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6.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가. 전산 설비: 다음의 전산 설비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 (2)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 나.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의 설비
 - (1)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 (2)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 (3)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 (4)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첨부서류

6-1.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21218
■ 첨부서류 7-1 시청이이 [그으스비키 비중에 과하 버릇 시체력 : 제5조제2한제2호에 과하 시한에 전한하에
7-1. 신청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1) 및 (3)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
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만 해당)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 [그오스비카 비호에 과항 비로 - 케오즈케4호에 따로 그으사프키므에 오치트 메용이 됩니어 그으사프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 섬下시ㅠ │ 8-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9. 독립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기재할 것
 -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의 겸영 여부
 -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인지 여부
 - 다. 소속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인지 여부

■ 첨부서류

9-1. 독립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10. ユ	밖의	기	재	ス	- 항	ŀ
-------	----	---	---	---	-----	---

■ 첨부서류

10-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0-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 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 변경 보고서 양식

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1.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영위하는 다른 업종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 1-5. 주주명부 1부
-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변경 보고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요건의 변경 전, 후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첨부서류

2-1. 변경 보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3. 변경 보고 사유

<u>기재상의 주의</u> 1. 변경 보고 사항 별로 구분하여 해당 변경 사유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첨부서류 3-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4.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4-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붙임 3 신청인의 사회적 요건 및 독립성 요건 확인서 양식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 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	
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	
일임업은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	
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이하 "계열회사등")가 아닐 것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제3호제3호의 사회적 신용 요건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times$. \times ×. \times ×.

대표자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붙임 4 신청인 임원의 임원 요건 확인서 양식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 용	충족 여부 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이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1호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제2호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5년나. 정직요구: 장직요구일부터 3년제3호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제4호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임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times$. $\times\times$. $\times\times$.

성 명: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